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31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대식 · 김예지 · 김선교
김태규 · 고동진 · 김미애
김용태 · 윤한홍 · 박충권
김위상 · 조정훈 · 윤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 · 의료 · 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외국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안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재외국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안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